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6. 6. 1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6. 6. 19

라. 상정일자 :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96. 6. 19)상정

마. 의결일자 :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96. 6. 20)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이효선)

가. 제안이유

○ 재무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5급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의 인력만 승인되어 전문위원을 보좌할 일반인력이 부족한 바

○ 재무경제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조할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회사무직원의 정수조정

· 현 행 : 26명

· 개 정 : 27명(1명 정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없음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의 결	96. 6. 28
년 월 일	(제46회)

제출년월일 : 1996. 6.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재무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5급 전문위원 1명과 기능직 2명의 인력만 승인되어 전문위원을 보좌할 일반인력이 부족한 바
- 재무경제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조할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조정
 - 현 행 : 26명
 - 개 정 : 27명(1명 증원)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6명”을 “27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의 정수는 <u>26명</u> 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 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u>27명</u>
		
		